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선원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신설 〉

■ 조승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13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검토의견	2
1. 선원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신설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승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9.
3. 회 부 일 : 2024. 7. 10.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을 사용자가 불이행한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고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조항의 적용이 누락되어 있어 선원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IV. 검토의견

1. 선원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선원의 부당 해고 등에 대한 선원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 ----- -----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33조,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5조제1항은¹⁾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근로의 기준·준수, 균등처우 등에 필요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 「선원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상 규정 】

적 용 규 정	내 용
근로자, 사용자, 근로의 정의 (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근로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등 근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근로조건의 기준, 결정, 준수 및 균등처우 (제3조부터 제6조까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 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성·국적 ·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 별적 처우를 하지 못함
폭행 금지 등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함
임산부의 보호 등 (제40조, 제68조, 제74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 를 주어야 함
벌칙 (제107조, 제110조, 제114조)	의무 위반시 벌칙 적용

1) 「선원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적용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의 이행강제금²⁾ 부과제도를 보면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등을 당한 경우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노동위원회가 조사·심문 후 부당해고등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여 구제명령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도록 하는 이행강제금(최대 3천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확정된 구제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선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선원의 구제신청에 따라 선원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재심)가 이를 조사·심문하고 그 결과 구제명령을 결정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생³⁾하고 있음.

-
- 2)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근로기준법」과 다르게 그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없어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임.

【 「선원법」과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절차 비교 】

구 분		선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위	근거 법령	▶ 선원법 제4조 ▶ 노동위원회법 제2조	▶ 노동위원회법 제2조
	사무국	▶ 지방청 선원근로감독관 겸임	▶ 지방청과 분리한 별도조직 ▶ 중앙노동위원회 별도 운영
	업 무	▶ 부당해고(법 제32조, 34조), 재해보상, 부당노동행위 조정 중재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	
부당해고 등의 처벌		▶ 선원법 제167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u>부당해고등의 행위 자체에 대한 형벌 규정 없음</u>
구제절차		▶ <u>선원법 제34조(노동조합법 준용)에 따라 선노위(1심) → 중노위 → 행정소송</u>	근기법 제28조에 따라 지방노동위(1심) → 중노위 → 행정소송
이행강제금 제도		▶ 관련규정 없음	▶ <u>근로기준법 제33조 이행강제금</u>
구제명령 불이행 제재수단		▶ 관련규정 없음	▶ <u>근로기준법 제111조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u>

이에 개정안은 「선원법」상의 구제명령 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의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제도를 「선원법」에 적용토록 하려는 것으로,

3) <선원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미이행 사례>

- 씨스**(주)의 선원 해고(박**등 5명)에 대해 동해선원노동위와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결정('22.7.13.)을 선사가 미이행함. 이후 선사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재심)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22.7.15.)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선사를 「선원법」 32조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22.10.28)

구제명령에 대한 실효성 확보와 선원에 대한 부당 해고 등의 방지를 통한 선원의 근로 여건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① 「근로기준법」에서 이행강제금 도입 당시('06~'07), 부당해고 등에 대한 형벌규정(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문제 등이 지적되어 노사단체가 합의하여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동 형벌 규정을 폐지하고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게 된 배경(참고자료 1, p.8)과,

② 「근로기준법」 제111조에서는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규정⁴⁾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여부,

③ 또한, 20대·21대 국회에서 부당해고 등을 남용하는 사용자를 엄벌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을 삭제하거나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회부되었다는 점(참고 1, p. 9)에서 이행강제금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관계기관 의견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선원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구제명령의 이행력을

4) 「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확보함으로써 피해선원을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부당해고등에 대한 벌칙’과 ‘이행강제금 제도’의 동시 적용은 불합리하므로 개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선박소유자 단체(수협중앙회)의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전 노사 이해당사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19

참고 1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도입 배경

-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했을 경우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벌칙 규정(근기법 제110조)은 '07.1.폐지
- 동 형벌규정이 민사를 형사화하는 등 사용자의 정당한 해고권을 제한하고, 구제 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강제할 수단이 없어 당시 구제명령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들이 있어 노사정위원회는 부당 해고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되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담보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합의('06.9.11)
- 이를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에 부당해고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음('07.1.26)

참고 2 이행강제금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현황

□ 제21대 국회

제안일자	제안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1대 국회>		
'20.06.29.	한정애 의원 등 17인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인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최대한도를 3천만원으로 높이고(안 제33조 제1항), 부과기간은 4년으로 연장(안 제33조제5항)하는 등 개정
'21.04.29.	환노위원장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미이행 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한도인상(2천만원→3천만원, 안 제33조제1항)
'21.10.21.	윤준병 의원 등 10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행 2년으로 설정된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간 상한을 설정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는 한 이행강제금이 지속적으로 부과되도록 함(안 제33조 제5항 후단 삭제)
'23.04.20.	최강욱 의원 등 12인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사, 구제명령,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제29조부터 제33조 삭제)하는 등 개정
<제20대 국회>		
'16.08.10.	서형수 의원 등 19인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받고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그 시정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안 제43조의4 신설)하는 등 개정
'17.05.17.	김병욱 의원 등 36인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사, 구제명령,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제29조부터 제33조 삭제)하는 등 개정
'17.07.10.	박광온 의원 등 10인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및 제5항)
'17.07.31.	한정애 의원 등 10인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기한을 삭제하고, 부당해고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 하며, 아울러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품 및 100분의 20이내의 지연이자 지급(안 제30조제3항, 제33조제5항, 제107조)
'17.12.27.	서형수 의원 등 12인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의 부과액 수 상한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개정하고(안 제33조제1항), 현행 2년으로 설정된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간 상한을 설정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는 한 이행강제금이 지속적으로 부과되도록 함(안 제33조제5항)

제안일자	제안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08.26.	한정애 의원 등 19인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인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최대한도를 3천만원으로 높이고(안 제33조제1항), 부과기간은 4년으로 연장(안 제33조제5항)하는 등 개정